
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-인천항만공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"SCCEI"), 인천항만공사(이하 "IPAI")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SCCEI, IPA 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한 창업기업 발굴 및 '오픈이노베이션' 사업의 공동 협력
2.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,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협력
3.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행사 참여
4.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사업 협력 시스템 구축

제3조 (부속 업무협약의 체결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부속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 (정보제공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, 비밀 유지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동의 없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 (협약이행)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7조 (법적구속력) 본 협약은 양사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, 제4조, 제5조 이외에는 양사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.

제8조 (효력발생)

-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,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.
-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·서명하여 각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30일


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

대표이사 이영근 (인)



인천항만공사

사장 이경민 (인)

